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고번호                      | 건 명                             | 개찰 일시                    |
|---------------------------|---------------------------------|--------------------------|
| 대구광역시교육청<br>공고 제2026-356호 | 대구유아교육진흥원 분원<br>CCTV장비 제작 구매 설치 | 2026. 9. 22.(화)<br>11:00 |

이 견적제출 공고문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관급자재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시교육청 회계정보과(☎053-231-0695)
- 관급자재에 관한 세부사항 : 대구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3-231-084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물품 제작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 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명: 대구유아교육진흥원 분원 CCTV장비 제작 구매 설치

나. 규격 및 수량: 상세내역은 붙임 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의함

다.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2027. 2. 12.까지

(단,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사유 발생 시에 납품기한 연장)

라. 납품 및 설치 장소: 대구유아교육진흥원 분원(구 교동중) 내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금8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 (단, SW는 1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전 붙임 내역서 및 설계도면, 시방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사양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시설과 담당자(☎231-08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8일 10:00부터 ~ 2026년 9월 22일 10:00까지**

##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22일 11:00,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 상대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2.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3. **견적제출안내 공고일의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가-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영상감시장치(4617162201)]”**를 소지한 업체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7.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8.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 가. 견적(입찰)제출의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pm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본 물품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지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바.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사. 동 건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건적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br>보험료 | 산업안전보건<br>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
| 286,866원 | 379,030원 | 37,694        | 165,177원      | 0원      |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11. 청렴계약 이행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2. 기타사항

- 가. 입찰 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 유의서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라. 본 입찰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 9. 16.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별지 1>

## 각 서

|        |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불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      |      |
|----------------|---------|------|------|
|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br>(확인인) | 성명      | 소속   |      |
|                |         |      |      |
|                | 연락처     |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br>[ ] 아니오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br>[ ] 아니오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br>[ ] 아니오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br>[ ] 아니오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br>[ ] 아니오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br>[ ] 아니오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br>[ ] 아니오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br>[ ] 아니오 |
| 발주자<br>확인<br>사항 |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br>[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 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 ■ 부패신고

##### ●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 ●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 ● 신고방법

·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

· 공익신고(청렴포털)

· 전화: 053) 231-0102 ~ 0107

· 팩스: 053) 757-8209

· 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 · 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